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
(주민안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95호
- 나. 제출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이상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- 다. 폭염 대비 종합대책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.
- 라. 폭염 저감조치,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마. 폭염 취약계층 지원(안 제7조).
- 바.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(안 제8조 및 제9조).

4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, 제33조의2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라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여 폭염으로부터 금천구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
- 주요 조문을 검토하면
 -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9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 -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“폭염”과 “폭염특보” 등의 용어를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상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적용함
 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구민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“폭염대비 종합계획”을 수립하여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,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등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음.
 - 안 제6조에서는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

- 안 제7조에서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매년 거듭되는 기록적인 “폭염”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도 그동안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이 있어
-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9월 18일 법령의 개정을 통해 “폭염”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음.
- 참고로 2023년 7월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해였음.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고 7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폭염이 지속되었음. 이 기간 동안 서울의 최고기온은 7월 7일 39.5℃까지 치솟았으며, 이는 서울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임.
- 폭염 기록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집행부에서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, 주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금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폭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3. 8. 17.] [법률 제19406호, 2023. 5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9의3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

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자연재해대책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17호, 2022. 12. 27., 타법개정]

제3조(책무)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0. 22., 2017. 10. 24., 2020. 1. 29.>

6. 폭염대책

가. 폭염피해 예방대책

나.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
다. 각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

라.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제33조의2(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
2.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
3.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·관리 및 장비의 확보
4.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
5.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6. 8.>

[본조신설 2020. 1. 29.]